

ICT 학점이수인턴제 운영을 위한 「2015년도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지원사업」 2학기 공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서는 이론과 실무역량을 겸비한 문제해결형 ICT인재를 양성하고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ICT 학점이수인턴제」 운영을 위한 「2015년도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지원사업」 2학기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대학과 기업은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18일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사업목적

- 중소·중견 기업의 R&D프로젝트, 서비스 개발 등에 학생이 참여하여 인턴십을 수행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도록 하여 이론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문제해결형 ICT 인재를 양성

□ 관련법령 및 규정

- ICT특별법 제12조,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5조, 시행규칙 제2조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연수기업) ICT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른 중소·중견·벤처, 공공기관 등
 - (대학) ICT 특별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등
 - (학생) 위 대학의 정보통신 융합 등 분야의 관련 학과의 전공자, 복수전공자 또는 부전공자
- (지원기간) 대학 학사일정에 따른 학기('15년 2학기)
- (지원규모) 14억원('15년 전체 지원규모)
- (지원내용) 인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 * 현장실습생수당, 연수기업의 근무환경구축비, 지도인력수당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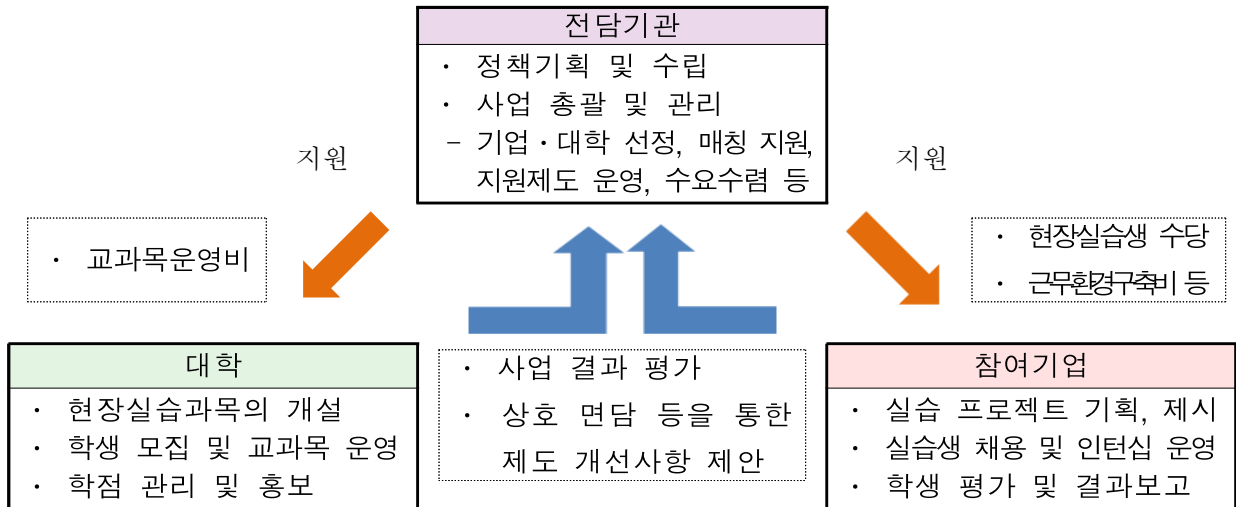
< 지원 예시 >

구분	지원 항목
연수기업 및 인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생수당/지도인력수당 · 현장실습운영비/근무환경구축비 · 실습생 직무교육비(직무수행 관련 외부전문기관의 단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 현장실습체재비(학생이 연수기업 소재지 근방에서 체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참여대학	· 교과목운영비(현장실습생 채용이 확정된 학생에 대하여 현장실습 기간 동안 지급)

※ 현장실습생수당(100만원/월), 지도인력수당(30만원/월), 교과목운영비(학생당 20만원/월) 등

□ 지원체계 및 절차

○ (지원체계)



○ (절차)

① 신청 접수	(기업) R&D 프로젝트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신청서류 제출 (대학) 교과목 운영계획, 변경 학칙 등을 포함한 신청서류 제출
↓	
② 연수기업 선정/ 참여대학 승인	(기업) 현장실사 및 제출서류 서면평가 등을 통한 연수기업 선정 (대학) 제출서류 검토 후, 지침에 따라 참여대학 승인
↓	
③ 인턴 매칭	(대학) 기업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학생들의 희망 연수기업 신청 (기업) 학생이력서 및 면접 등을 통해 현장실습생 선정
↓	
④ 교과목 개설 및 수강 신청	(대학) 운영계획에 따른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교과목 개설 (학생) 개설된 관련 교과목에 수강 신청
↓	
⑤ 인턴 근무/지원	(기업/학생) R&D 프로젝트/서비스 개발 등, ICT 인턴십 프로그램 진행 (대학) 연수기업 현장 방문, 실습학생 관리(애로사항 청취 등)

□ 신청자격

- **(연수기업)** 실습생 지도에 필요한 근무환경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ICT 관련 직무를 부여하고 지도할 수 있는(지도인력을 보유한) 역량을 보유한 기업으로, 다음 각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기관, 또는 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 「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연구기관
- 그 밖에 대학의 실습학기제 운영에 적합하다고 학칙에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 등의 분야와 관련된 국내외의 기관, 기업 또는 단체

- **(대학)**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관련 학과를 보유하고 학칙 개정을 통해 학점과 연계된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현장실습 교과목을 개설하여 ‘15년 2학기부터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교육기관으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 **(학생)** 위 대학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을 통해 학점이수가 가능한 학생 (학부생, 대학원생, 부전공자, 복수전공자 포함)

□ 의무사항

- **(연수기업) 민간 부담금 조성 및 직무 기반 인턴 프로젝트 운영**
 - **민간부담금 조성** : 연수기업은 정부지원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조성해야 함
 - **관련 직무 부여** : 연수기업은 ICT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된 직무를 기반으로 인턴 프로젝트를 운영해야 함

1.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구현
2. 하드웨어의 설계·개발 및 구축
3. 정보통신서비스
4.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등 분야에 관련된 직무

○ (참여대학) 학칙 반영 및 교과목 개설·운영

- 학칙 반영 : 학칙 및 하위규정 등에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교과목 운영에 대한 제반 규정이 반영되어야 함
- 교과목 개설 및 운영 : '15년 2학기에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교과목이 개설되고 수강 신청 및 운영이 가능해야함

○ (학생) 수강 신청 및 인턴십 프로그램 수행, 학점 이수

- 본 제도에 참여하여 연수기업에 최종합격한 학생(현장실습생)은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교과목에 수강신청을 해야 하며, 인턴십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해당 교과목에 대한 학점을 이수해야 함

□ 선정기준

○ (연수기업) 현장평가 및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등 서면평가 병행

평가항목(비중)	주요내용
적정성 및 수행 역량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건정성, 현장실습 및 재직 환경 · 기업의 성장가능성, 특화·독자적 기술력 보유 여부, 향후 비전 · 기 추진한 R&D프로젝트 관련 실적 · 프로젝트/서비스 개발 내용의 우수성 및 구체성 · 프로젝트의 인턴 교육에 대한 기여도
인턴 운영 계획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내 인력양성 관련 실적 및 의지 · 인력양성에 대한 CEO의 이해도 및 관심도 · 인턴 지도인력의 전문성 및 참여도 · 인턴 지도계획의 우수성
후속 계획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물 사업화 및 성과 창출 계획 · 인턴 평가 및 교육 피드백 계획 · 참여 인턴 고용연계 계획

○ (참여대학) 교과목 운영계획서 등 서면검토 후 승인

평가항목(비중)	주요내용
적정성 및 수행역량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T·융합분야 비중(관련 학과 규모 등) · ICT 분야 연구 실적 및 성과 · 산학협력 활동 실적 및 계획 등
인턴 운영 계획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점 부여, 인턴 선발 계획의 적정성 · 전담교수 지정 등 학사 관리의 적정성 · 사전 교육·현장방문 등 관리 계획의 적정성
후속 계획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강생 평가 및 교육 피드백 계획 · 수강생 사후 관리 계획 등

☐ 지원제외 등 유의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 ☞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 중 참여 제한 조건에 해당하는 자
-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정산금, 기술료 미납 기업은 참여 제한
* <http://rndgate.ntis.go.kr> 에서 제재정보 확인 가능

○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부적합한 경우 제외 가능

☐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15. 5. 18 ~ 2015. 6. 17.

○ 접수기간

- 연수기업 : 2015. 6. 1. ~ 2015. 6. 17
- 참여대학 : 2015. 6. 29. ~ 2015. 7. 10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ictintern@fkii.org)

○ 제출서류 : 공문(스캔본), 신청서(스캔본), 기타 별첨 서류(통합 압축파일 제출)

- ☞ 관련양식은 IITP 및 FKII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
 - * IITP 홈페이지 사업공고 : <http://iitp.kr/kr/1/business/businessNotify.it>
 - * FKII 홈페이지 공지사항 : http://www.fkii.org/2014/board/tot.list.php?BBS_GUBUN=9
- ☞ 날인이 포함된 제출서류(공문, 신청서, 별첨 서류 등) 준비 후, 1개의 압축파일로 통합하여 상기 이메일(ictintern@fkii.org)로 제출

☐ 사업설명회 개최

○ 1차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5. 5. 28(목) 15:00 ~ 16:00
- 장 소 : 서울 SW마에스트로연수센터 7층 (선릉)

○ 2차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5. 5. 29(금) 15:00 ~ 16:00
- 장 소 : 대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대강당

○ 3차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5. 6. 2(화) 14:00 ~ 15:00
- 장 소 : 부산 BEXCO 제1전시장 218호
- * 현지 사정에 의해 일시 및 장소 변동 가능

☐ 문의처

○ 접수 및 문의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산학협력팀 (☎ 042-612-8432, bjlee@iitp.kr)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산학협력팀 (☎ 02-2132-0716, khj@fkii.org)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nstitute for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romotion